



평등한
접근
기회



법
입
니
다.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MICHAEL R. BLOOMBERG, 시장

PATRICIA L. GATLING, 위원 / 위원장

평등한 접근 기회법입니다.

장애인은 주택, 공공 시설, 고용, 교육 및 교통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분야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방, 주 및 시 시민권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접근 기회를 장려합니다.

본 브로셔는 주택, 공공 시설 및 고용 분야에서 뉴욕시 인권법 (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뉴욕시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장애(disability)”를 신체적, 의학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impairment), 또는 장애 전력 또는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세입자 및 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세탁실 또는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등과 같이 모든 거주자들에게 개방된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점, 레스토랑, 의료 시설, 극장, 또는 은행에 출입하거나 이용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장소



램프(진입 경사로)가 설치된 건물은 휠체어 사용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에 일정한 수용 장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 (reasonable

accommodation)란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제공자, 회사 소유주,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고용주는 “장애인이... 해당 권리 또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 제 8항 107(15)*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REASONABLE ACCOMMODATION)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해당 주체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용 장치를 의미한다. 부당한 어려움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체가 갖는다.”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 제 8조 102(18)

“무엇이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로 간주될 것인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며, 그러한 수용 장치



장애인이 서비스 담당자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은행 창문을 낮췄습니다.

가 부당한 부담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나이티드 베테런즈 뮤추얼 하우스링 No. 2 조합(United Veterans Mutual Housing No. 2 Corp.) 대.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는 건축상의 변경이 관련된 구조적인 것 일 수도 있고, 또는 정책이나 규정상의 변경일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법은 해당 수용 장치의 성격 및 비용과 해당 주체의 전체적인 재정적 자원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 요청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인권 위원회는 납세 기록, 재무제표, 자산 감가상각, 그리고 해당 주체의 매출 및 비용 지출을 반영하는 일체의 기타 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장치가 자발적으로, 또는 조정을 통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판사가 개입해 무엇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HOUSING)

뉴욕시에서는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상의 장애,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외국 국적 신분 또는 시민권 지위, 성별(성적 정체성 및 성희롱 포함), 성적 성향, 종교, 결혼 여부, 파트너십 상태, 자녀의 유무, 나이, 합법적 직업 등을 근거로 주택과 관련해 차별 대우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상의 장애를 근거로... 그러한 주택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그와 관련된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해당 개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불법적 관행이다.

뉴욕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 제 8조 107(5)(a)(2)



물리적 공간의 변경이 개입된 주택 수용 장치의 예:

- 휠체어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건물을 출입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에 램프(진입로)를 만드는 것.
-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탕이나 화장실로 안전

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목욕탕에 손잡이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

- 손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 문 손잡이를 레버형 손잡이로 교체하는 것.
- 자동 문 개폐기를 설치하는 것.

정책 또는 규정 변경이 개입된 주택 수용 장치의 예:

- 해당 건물이 “애완 동물 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시각 장애와 같은 물리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서비스 또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주차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 “선착순” 규정을 수정하는 것.

- 24시간 건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 가능한 방향의 출입구 출입용 열쇠를 제공하는 것. (목표는 비합리적이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주 출입구를 통한 평등한 접근 기회 보장입니다.)

- 회의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주 또는 세입자 모임을 다른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가지는 것; 청각 장애가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모임에서 통역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공공 시설(PUBLIC ACCOMMODATIONS)

뉴욕시에서는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상의 장애,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성별, 장애, 결혼 여부, 파트너십 상태, 성적 성향, 외국 국적 신분 및 시민권 지위를 근거로 공공 시설에서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은 일반 대중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레스토랑, 상점, 의료 시설, 영화관, 은행, 공원 및 기타 대중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공 시설 장소 또는 제공자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상의... 장애...에 근거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해당 장소 또는 제공자의 시설 이용, 이점, 설비 또는 특권 제

공을 거절,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또는 (장애인)은 고객으로 환영하지 않거나, 불쾌하게 여겨지거나, 또는 용납할 수 없거나, 원치않거나 또는 이용을 청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은 차별적 관행이다” 뉴욕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 제 8조 107(4)(a)

“가능한 경우 공공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수용 장치가 부당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라커룸이 많습니다.



카드 두는 곳이 잠겨있거나 통로가 막혀있을 경우 휠체어 사용자들의 상점 접근을 막습니다.

한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수용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타탈리아 (Tartaglia) 대. 잭 라넨 피트니스 센터즈(Jack LaLanne Fitness Centers, Inc.)

많은 상점이나 레스토랑의 경우 입구에 한 칸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 칸 계단은 간단한 장애물일 수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수백 개의 상점이 램프(경사 진입로)를 설치하거나 보도 높이를 조절해 대부분 자발적으로 한 칸 계단을 없앴습니다. 뉴욕시 건축 사무국(NYC Buildings Department)는 일부 램프 설치와 같은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및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 사무국 기술 정책 및 절차 공고(The Department of Building’s Technical Policy and Procedure Notice) TPPN # 1/95)

주 출입구를 통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최대한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범위 내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한 칸 계단을 램프로 바꾸는 것은... 쉽게 실행 가능한 일이며, 많은 경우, 여러 개의 계단을 램프로 바꾸는 것도 쉽게 실행



카트 모아두는 곳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상점을 쉽게 출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행 가능한 일이다.” 장애 미국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andbook)
 핸드북

물리적 변경이 개입된 수용 장치의 예:

- 상점, 레스토랑, 또는 기타 공공 시설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단(들)을 없애는 것.
-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 디스플레이 선반, 또는 기타 가구류를 재배치하는 것.
-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극장 내 좌석 배치를 조정하는 것. (접근 가능한 좌석은

다른 좌석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동등한 시설을 갖추고 극장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폭 최소 32인치인 입구를 만들기 위해 카트 모아두는 곳을 바꾸거나 없애는 것.

정책 또는 규정 변경이 개입된 수용 장치의 예:

- 서비스 제공자가 “애완 동물 금지” 정책을 실시중이라 하더라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또는 이동성 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개인이 반려 동물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
- 신속 계산대(express



휠체어로도 접근 가능한 ATM 기계를 설치한 은행이 많습니다.

checkout)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경우, 구매한 물품 전체에 대해 신속 서비스 계산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상점은 최소 1 개의 접근 가능한 개방형 계산대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정보 전달을 위한 보조 기구 또는 대안이 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고용(EMPLOYMENT)

여러분이 장애인인 경우, 여러분의 고용주는 여러분이 맡겨진 직무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직원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수용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여러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면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구직 응시자에게 응시자의 구체적인 업무 기능 수행 능력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어도, 장애의 존재 여부, 성격,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고용 제의를 하기 전까지는 구직 응시자에게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응시자를 대상



수화 통역자가 있으면 청각 장애자들도 회의나 이벤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신체 검사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고용주의 비즈니스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직원 수용 장치의 예:

- 직원의 사무 공간(cubicle)을 넓힌다든지 접근 가능한 라운지나 회의실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장애를 가진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근무 시설을 바꾸는 것.
- 신체적으로 덜 힘들지만 현재 공석이고 현재 직무와 비슷한 종류의 직책으로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직무 재구성 또는 재배치.
- 의료 치료나 세라피를 자주 받는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등,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것.

-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전화 수화기 등과 같이 장비나 장치를 제공 또는 변경하는 것.
- 시험 시간 연장이나 오디오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시험, 교육 자료, 또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
- 시각적으로, 또는 발음상으로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리더(reader) 또는 통역자를 제공하는 것.



장애자 주차 공간이나 근접한 접근 통로가 있으면 상점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고용주들은 수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질적 또는 양적 표준을 낮출 필요는 없으며, 장애 직원에게 안경이나 보청기 등과 같은 개인 용품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접근 기회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간혹 뉴욕시 건축물 규정(NYC Building Code)과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비즈니스나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구조적 변경을 시행하지 않아



뉴욕시는 커브 컷(curb cut)과 질감 타일 설치로 더 접근하기 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정하는 일종의 민권법이며, 주택 및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에 관계 없이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축물 규정(NYC Building Code)은 접근성 표준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과 이용 용이성을 제공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6 페이지 참고)

일부 소유주들은 자신의 빌딩이나 비즈니스가 지형 지물 건축물이나 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형 지물 지위는 장애인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형 지물 지위를 가진 건축물의 경우 뉴욕시 지형 지물 위원회(NYC Landmarks Commission)가 물리적인 변경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거주 건축물 소유주의 경우 더 엄격한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이 인

권법(Human Rights Law)에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연방 공정 주택 규정이나 연방 장애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별개의 법입니다.

구제책 및 법적 결정

장애인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수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건축물의 공동 구역내 변경과 개인의 아파트 내부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는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이 장애 관련 주택과 공공 시설 사

건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HOUSING):

- 퀸즈(Queens)에 있는 한 주택 조합은 “장애를 가진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회사 자금의 지출을 요구하는 수용 장치를 포함, 모든 수용 장치를 마련”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 베테런즈 뮤츄얼 하우스링 No. 2 조합(United Veterans Mutual Housing No. 2 Corp.) 대,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 한 판사는 “장애 세입자가 비장애 세입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아파트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마련하기를 건물 소유주가 거부”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레스(Torres) 대 프린스 매니지먼트(Prince Management Corp.)
- 한 판사는 한 브롱스(Bronx) 건물 소유주에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들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한 판사는 지형 지물 구역 내에 있는 한 맨해튼 (Manhattan) 주택 조합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주자가 요청한 대로 건물의 주 출입구에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해당 주택 조합이 대신 지하층에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이 비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결하고, 그러한 승강기는 해당 건물에 대해 평등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으며,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해당 주택 조합에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말했습니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ex. Rel. 라니 레이몬드(Ronnie Raymond) 대 325 조합(325 Cooperative Inc.), 및 그 이사회(Board of Directors, 325 Cooperative, Inc.)



레버형 문 손잡이를 달면 문 열기가 더 쉬워집니다.

공공 시설(Public Accommodations):

- 한 판사는 퀸즈(Queens)에 있는 한 의류 상점이 두 사람의 휠체어 사용자에게 판매를 거부한 것은 인권법 (Human Rights Law)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휠체어를 가리키며, “그거 당장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며 장애인들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즈가도우스키(Zgardowski) 대 카프리스(Caprice))
- 한 헬스 클럽은 한 시각 장애자 고객이 클럽의 스파 구역 안으로 자신의 안내견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타탈리아(Tartaglia) 대 잭 라랜 피트니스 센터즈(Jack LaLanne Fitness Centers, Inc.))



뉴욕시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서비스 동물들은 “애완 동물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장소에도 출입이 허용됩니다.

- 한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한 레스토랑이 입구에 한 칸 계단을 없애고 대신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들라는 인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명령(Order)에 따르기를 계속 거부한 데 대해 해당 레스토랑에 뉴욕시와 법원에 5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대 럭키 도그 다이너(Lucky Dog Diner) 및 베드포드 폴즈 리얼티(Bedford Falls Realty))

고용(EMPLOYMENT):

다음 고용 사건은 정식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애인 접근 문제에 개입해 성공적인 해결을 이루어낸 인권위원회의 평등한 접근 기회(Equal Access)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발달 장애를 가진 남성이 정신적 장애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 취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직원이 개입했고, 그 남성은 병원의 건강도우미(health aide) 보조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 한 고용주는 직원이 복도를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내부 경사진 곳에 손잡이 난간을 설치해 수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한 고용주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 공간(cubicle) 벽을 넓히고, 컴퓨터 높이를 낮추고, 내부 문 압력을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수용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건물, 비즈니스 소유주/관리자, 또는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물리적 장벽 또는 정책 때문에 해당 시설에 출입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주어진 직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수용 장치를 요청한 후, 해당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십시오.

- 합리적인 수준의 기간을 두고 요청한 수송 장치를 해당 소유주 또는 관리자/감독자가 마련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여러분의 장애가 눈에 띄는 장애가 아닌 경우, 여러분 장애에 관한 의료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유주,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고용주에게 의료 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진 장애의 성격을 묘사하고 해당 장애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을 보여주는 의료 서비스 전문가 또는 제공자로 부터의 문서는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소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평등한 접근 기회(Equal Access)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공식 민원을 접수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평등한 접근 기회 프로그램 (EQUAL ACCESS PROGRAM)

뉴욕 인권 위원회 평등 접근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Equal Access)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주택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수송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원은 주민, 소비자, 건물 소유주, 상점 소유주 및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알려 주고, 더 광범위하게는 평등한 접근 기회 및 포용의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합니다.

평등한 접근 기회(Equal Access) 직원은 건물 소유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수송 장치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을 대신해 해당 소유주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 얘기합니다. 적절한 수송 장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실질적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구제 방안 중점을 두고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



장애자 차선은 주차장에서 안전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에는 이용 가능한 금전적 또는 건축적 자원을 지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식으로 차별에 대한 정식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은 우선 장애물 제거나 정책 변경과 같은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 협상을 시도합니다.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준수에 중점을 둡니다. 이같은 시도가 실패할 경우, 평등한 접근 기회(Equal Access) 직원은 이러한 민원을 법 집행 담당자에게 넘겨 후속 조치하도록 합니다.

요청이 거절당할 경우

- 건물 소유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에 대한 여러분의 요청

을 무시하거나 거절할 경우,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회가 여러분의 고소를 도와드립니다. **면담 일정을 잡으려면 (212) 306-7450번이나 3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뉴욕시 인권법(NYC Human Rights Law)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 민원의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동성과 접근 용이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영구적 조건이며, 그 존재는 이같은 시간적 제한을 연장시키는 지속적 유해를 발생시킵니다.
- 구제책에는 요청한 수용 장치와 금전적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는 차별적 행동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자비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한 주택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민사 처벌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차별 방지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물리적 장벽 및 기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소비자들과 제공자들에게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알려줍니다.
- 주택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물리적, 정책적 장벽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불법적 행위를 처벌합니다.
- 차별을 완화하고 억제 효과를 갖는 구제책을 모색합니다.

FAQ

(장애인)

Q. 임대 대리인이 저의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주나 그 중개인이 장애 유무, 장애의 성격, 또는 독립적인 생활 가능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애인들을 위해 지정된



단지 한 개 내지 두 개의 계단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건물 소유주는 여러분의 니즈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적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주택 제공자가 장애를 이유로 신청자에게 임대나 판매를 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A. 중개인은 장애가 없는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분에게 임대 또는 판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인은 여러분에게 추가 보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현재 조합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수용 장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까?

A.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공공 및 개인 소유 주택, 임대 주택, 조합 주택, 콘도 등 모든 유형의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아파트 내부 변경은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공동 구역을 접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조합 주택의 세입자도 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Q. 처음 이 건물로 이사왔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용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건물 소유주는 제 니즈를 충족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의료적 필요를 입증한 개인이 있을 경우, 그리고 해당 수용 장치가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Q. 제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자체는 접근에 문제가 없는데 지하층에 있는 화장실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수용 장치

로서 접근 용이한 화장실을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A. 그런 요청을 할 권리는 있지만, 지상층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부당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Q. 저는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제 건물 주인한테 현관문 벨 대신에 깜박거리는 등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나요?

A.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한 유형의 수용 장치의 설치하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제게는 너무 좁아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건물주에게 통로를 넓힐 의무가 있나요?

A.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에서 정하는 장애인 수용을 위한 요건은 공공 구역 내 변경과 개인의 아파트 내 변경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FAQ

(주택 및 서비스 제공자)

Q. 저는 업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을 위해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들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A. 업소는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 190 조 및 44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해 접근을 개선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개선은 장애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준수해야 합니다.

Q.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제 건물이나 업소의 외관을 바꿔놓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인권법은 장애인의 필요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 장치가 규정을 준수하

고, 해당되는 경우 지형 지물 요건도 충족시키는 경우, 램프(진입 경사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법 선택은 여러분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떤 업소 및 건물 소유주는 콘크리트, 사전 조립된 금속 또는 처리된 목재를 사용해 단순한 디자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소유주들은 연철과 곁을 살린 돌을 사용해 한층 더 정교한 디자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Q. 장애인에게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들거나 다른 변경을 실시하는 데 건축 사무국(Department of Buildings)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A. 제안된 작업의 성격에 따라 건축 사무국(Department of Buildings)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PPN #1/95*은 “사소한 변경”일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안된 작업이 건축 사무국의 지침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정식 면허가 있는 건축설계사나 토목 기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램프(진입 경사로)는 대부분의 건물 입구에 만들 수 있습니다.

Q. 램프(진입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아이들이 그 위에서 놀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정해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수용 장치를 제공할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사용을 금하는 규정을 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 후에 잘못된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소유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Q. 저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한 칸 계단 위로 휠체어를 밀어올려 주거나 안아올려 입구를 통과하게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독립성에 중점을 두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장애인이 상점이나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선한 의도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Q. 사용자가 단지 한 사람 뿐이어도 수용 장치를 마련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Q. 램프(진입 경사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A. 여러분이 접근 용이성 기준과 뉴욕시 건축물 규정(NYC Building Code)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램프(진입 경사로)를 경제적인 비용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몇가지 기본 물리적 요건이 있습니다.

램프 경사도 및 높이

램프의 길이는 계단(들)의 높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허용 경사도는 1:12입니다. 계단 높이 매 1인치 마다, 램프 길이는 12인치가 되어야 합니다.

1-3인치 사이의 계단의 경우, 램프 경사도는 최소 1: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6인치 사이의 계단의 경우, 램프 경사도는 최소 1: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폭

최소 안 치수가 36 인치이어야 합니다.

랜딩(Landings)

랜딩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평평한 표면에서 입구로 들어가거나 문을 열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랜딩은 최소한 램프와 같은 폭이어야 하며, 최소 60 인치 길이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손잡이 난간

손잡이 난간은 길이가 72인치 이상되는 램프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손잡이 난간은 램프의 양쪽에 모두 설치해야 하며, 램프 표면으로 부터 30 인치 내지는 34 인치 위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서리 보호

랜딩과 램프의 모서리 보호는 사람들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표면

램프 표면은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로 문

최소 안 치수가 32 인치이어야 합니다.

문 여는 힘

바깥 문의 경우 8.5 lbf(pound force)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안 문의 경우 5 lbf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문 여는 힘의 단위는 “포스 미터 (force meter)”입니다.

표시

접근 용이성 기호 표시는 연방 규정에 따른 접근 용이성 기호 및 비상시 정보에 대한 국제 기호 또는 일반 배포 지시 사항 기호에 의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은 접근 용이성 기호를 표시해 줌으로써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표시는 해당 공간에 주차된 차량

에 의해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유용한 전화번호

고용, 주택, 공공 시설 차별 신고 뉴욕시 인권 위원회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212.306.7450번 또는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뉴욕시 임대료 제한 아파트와 관련한 건물 유지-보수 및 위반

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SCRIE: 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NYC Department for the Aging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장애자 임대료 인상 면제 (DRIE: Disabled Rent Increase Exemption)

NYC Department of Finance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뉴욕 시장실 장애인 담당실(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788.2838

모기지 상담 및 고리대금식 대출 방지

뉴욕시 인권 위원회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718.886.6162번
TTY – 212.504.4115

뉴욕시 임대료 제한 아파트 관련 질문 및 민원

NYS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임대료 정보: 718.739.6400번

연방 주택 차별 신고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800.669.9777번

연방 주택 건물 소유주/세입자 분쟁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800.685.8470번
TTY – 800.432.2209

시소유 주택 관련 정보, 민원, 서비스

NYC Housing Authority (NYCHA)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뉴욕시 인권 위원회 사무소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40 Rector Street
New York, NY 10006
www.nyc.gov/cchr

뉴욕 연결 서비스:

영어: (800) 421-1220 스페인어: (877) 662-4886

311번: 뉴욕시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Center (하루 24시간 주중 무휴) 170개 언어로 발신자 지원이 제공됩니다.

CCHR Community Service Centers

맨해튼 (MANHATTAN)

40 Rector Street, 10th Fl.
New York, NY 10006

① ⑨ W R Rector St. 방향
② ③ ④ ⑤ Wall St. 방향

브롱스 (BRONX)

1932 Arthur Avenue, Suite 203A
Bronx, NY 10457

④ East Burnside Ave 방향.
⑤ East Tremont Ave., 방향
West Farms Square.

BX40, BX42 to Arthur Ave.

브루클린 (BROOKLYN)

275 Livingston Street, 2nd Fl.
Brooklyn, NY 11217

② ③ ④ ⑤ Nevins St. 방향
R M B Q DeKalb Ave. 방향
B37, B41, B45, B67 and B103 to
Livingston 과 Nevins Sts. 방향
B25, B26, B38 B52 Fulton 과
Bond Sts. 방향

스테이튼 아일랜드 (STATEN ISLAND)

60 Bay Street, 7th Fl.

Staten Island, NY 10301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 반대편.
St. George 방향 Staten Island
Railroad.

S42, S46, S48, S51, S61, S62,
S66, S67, S74, S76, S78, S81,
S84, S91, S92, S96, S98 -Bay St.
방향, S40, S44, S52, S90, S94 -
Richmond Terrace 방향.

퀸즈 (QUEENS)

153-01 Jamaica Avenue, 203호실
Jamaica, NY 11432

Jamaica Center-Parsons/Archer행
열차는 J Z E

Parsons Blvd.와 Hillside Ave행

열차는 F

Jamaica Center-Parsons/Archer 방향
빠스는Q25, Q34, Q65.

Parsons Blvd.와 Jamaica Ave.방향
빠스는Q6, Q8, Q9, Q41, Q54,
Q56, Q110.

153번가와 Parsons Blvd.간 Jamaica
Ave.방향 빠스는Q30, Q31, Q44, Q83.
Jamaica Ave.와 90번가간의 153번가
방향 빠스는 Q111, Q112, Q113.



아킬리즈 트랙 클럽(Achilles Track Club) 회원인 로라 스타(Laura Stam)은 2005년 ING 뉴욕시 마라톤 여자 핸드사이클 부문(Women's Handcycle Division)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